
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이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59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9.

발 의 자 : 이정현 · 허성무 · 박홍배  
강준현 · 김 현 · 곽상언  
손명수 · 정혜경 · 이주희  
조인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.

결혼이민자는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지라도 조만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3호차목 신설).



법률 제 호

##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차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
### 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3. “국가건강검진”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자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차.</u> (생 략)</p> <p>4. (생 략)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자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차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카.</u> (현행 차목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